

[참고자료 1] 참여기업 대면평가서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 대면평가표

사 업 명			
과 제 명			
참여기업		총괄책임자	

구 분	평가항목	평 가 지 표	적합여부 확인				
			적합	부적합			
사업계획 필수사항 검토	1. 자격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기업의 자격조건(훈령 제42조) 등 	()	()			
	2. 동일·유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지원 과제의 사업 중복 참여 여부 	()	()			
	3. 수행기관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령 제50조에 따른 신청자격 및 제한 	()	()			
	※ 필수사항 검토는 각 평가지표별 부합여부를 평가하여 1개 평가지표라도 부적합 시 검토제외하며, 모두 적합 시에 한하여 평가표를 작성						
평가항목	세 부 항 목	평 가 지 표	평 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 사업 계획 및 역량 (50)	○ 사업목표 및 사업 수행 방법(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사업 추진 의지 	5	4	3	2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목표 설정 근거의 타당성 및 협약 기간/방법의 적정성 	10	8	6	4	2
	○ 사업 추진체계 (역할분담) 및 수행 능력(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전담 조직의 규모 및 전담인력의 전문성 	5	4	3	2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기관과의 역할분담 ■ 자체 보유 핵심 기술 여부, 자체 R&D성과 등 	5	4	3	2	1
	○ 품목·수출 경쟁력(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공인인증획득 보유 수준 (신청 제품에 대한 인증 획득 여부) 	5	4	3	2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시장 선정 및 해당품목의 수출전략의 적절·타당성, 해외시장 진출가능성 		15	13	11	8	6	
2. 시장진출 노력 (25)	○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결과의 활용성 및 파급효과 ■ 수출품목의 기술적 파급효과 ■ 고용창출 예상효과 등 	10	8	6	4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산전시회 참가, 해외바이어 발굴 노력, 수출실적증명원 등 ■ 수출 전담조직 운영 여부, 수출추진 계획의 구체성, 적정성 	15	13	11	8	6
3. 경영 상태·건전성 (10)	○ 영업 이익률(5) (정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이익/매출액 <p style="font-size: small;">* 0.09이상(5), 0.06이상, 0.09미만(4), 0.06미만 또는 신생기업(3)</p>	5		4		3
	○ 부채비율(5) (정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채총계/자본총계 <p style="font-size: small;">* 1.0미만(5), 1.0이상, 1.5미만(4), 1.5이상, 2.0미만(3), 2.0이상, 2.5미만(2), 2.5이상(1)</p>	5	4	3	2	1
4. 사업비 산정 및 사용계획(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산정 및 활용계획 적정성 ■ 지원 기간의 타당성 	15	13	11	8	6
합 계							
평가의견		<input type="checkbox"/> 우수한 점 : <input type="checkbox"/> 보완할 점 :					

평가위원

(서명)

[참고자료 2] 수행기관 신청자격

1 신청 자격

- 대한민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 수출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수행기관은 신청일 기준, 최근 2개년 주요 서비스 실적 제출 필요 (자체양식 활용)
 - 해외인증획득 지원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수행기관은 신청일 기준 최근 2년간(당해 연도 포함)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 해당하는 요건에 대하여 자격 증빙 필수(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1. 기술사 자격을 보유하고 해외시스템인증분야 1년 이상 경력과 제품인증지원 실적이 4건 이상이거나, 기사(산업기사 포함) 또는 기능장을 보유하고 해외인증분야 2년 이상 경력과 제품인증지원 실적을 보유한 자
2.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자격을 보유하고 해외인증분야 1년 이상 경력과 제품인증지원 실적이 4건 이상인 자
3.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해외인증분야 3년 이상 경력과 제품인증지원 실적이 5건 이상인 자
4.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해외규격인증분야 5년 이상 경력과 제품인증지원 실적이 5건 이상인 자
5. 해외규격인증분야 7년 이상 경력과 제품인증지원 실적이 5건 이상인 자

2 신청 제한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제한됨

1.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로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참여 가능
2. 휴·폐업중인 기업
3.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에 참여기업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4. 「방위사업법」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입찰참가 자격제한 중에 있는 자